제 2 5 4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(2021.1.29.)

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



총 무 위 원 회

# 목 차

1	거창군 종합시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
2	거창군 체육시설 관라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9
3	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	24
4	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	29

## 의안번호 제2021 - 1호

## 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· └ **심 사 보 고 서** ·

2021. 1. 26.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. 1. 12.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1. 1. 14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

(2021. 1. 26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 강준석]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군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1) 복지관 주차장 주차요금 및 감면 기준 신설(안 제6조제4항, 별표 4)
- 2) 법령 개정·위배·재기재 사항 등 정비(안 제5조·제7조·제9조· 제10조, 별표 2)
  - 가) 용어 정비
    - (1) 전염병 ⇒ 감염병
  - (2) 3급이상 중증 장애인 ⇒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) 삭제 : 손해배상, 준용, 시행규칙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해용)

- 가. 거창군 종합사회복지회관 주차장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그와 관련 설치·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(公衆)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
- 나. 관계 법령에 맞게 복지관 사용료의 감면기준 재정비, 복지회관 주차요금 부과 및 감면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다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- 붙 임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제1호 중 "전염병"을 "감염병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군수는"을 "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"로 하고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군수는 복지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7조·제9조·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2 감면대상란 중 "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3급 이상 중증장애인"을 "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"으로 하고, 감면율 100분의 50란에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구조문 대비표

#### 현 행

제5조(사용허가 취소 등) 다음 각 호 제5: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 의 여 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지관

1. 전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

취소할 수 있다.

- 2.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
- 3.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
- 4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
제6조(사용료의 징수 등)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(이 하 "사용료"라 한다)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- ② <u>군수는</u>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료를 반환할수 있다.

<신 설>

제7조(손해배상)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 사용을 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 실로 복지관의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#### 개 정 안

제5조(사용허가 취소 등)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 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1.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
- 2.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
- 3.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
- 4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
제6조(사용료의 정수 등)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(이 하 "사용료"라 한다)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복지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 면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, 「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및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등을 준용한다.

▷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"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사 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한다."에 따라 민간위탁 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 우가 없으면 그대로 적용

▷위탁근거법령 우선순위: 공유재산법령 -공유재산조례-민간위탁조례 순

<u>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</u>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별표 2]

## 복지관 사용료 감면율(제6조제2항 관련)

감 면 대 상	감 면 율 (사용료에 대한 백분율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	100분의 50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	
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사람	
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	
해당하는 사람	
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	
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	
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사람	
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」	
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람	
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	
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	
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	
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사람	
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	
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	
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	

#### [별표 4]

##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요금 및 감면 기준(제6조제4항관련)

1. 주차요금 (단위: 원)

	일반차량		복지관 직원차량		
구 분	30분초과부터 40분까지	40분초과 10분마다	하루	하루	한달
주차요금	500	200	5,000	2,000	30,000

- 가.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.
- 나. 1회 주차 시 누적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하루 주차요금을 받는다.

#### 다. 주차 제한

- 1) 거창군이 시행하는 차량부제 운행대상 차량
- 2)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이 1.5톤 이상 화물자동차
- 3) 그 밖에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 2. 주차요금 감면

감면 대상	감면율
가. 주차장에 30분 이내 주차 나. 복지관에 민원업무로 1시간 이내 주차 다. 복지관 수강생이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2시간 이내 주차 라. 관용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마. 복지관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자동차(다만, 주차장 관리 부서에 협조 요청한 경우에 한정함)	100분의 100
<ul> <li>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차량 (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함)</li> <li>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다만, 다음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탑승 한 경우에 한정함)</li> <li>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2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3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4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5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6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7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8)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</li> <li>다. 경형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 1의 분류에 따름)</li> </ul>	100분의 50

## 의안번호 제2021 - 2호

#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

2021. 1. 26.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. 1. 12.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1. 1. 14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

(2021. 1. 26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]

## 가. 제안이유

○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1)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은 「체육시설법」 제5조·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재기재 사항은 삭제하고 법령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(안 제1조)

- 가) 정의 삭제(현행 제2조)
- 나) 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(안 제3조·제4조)
- 2)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(안 제7조·제8조)
  - 가) 군민이면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음
  - 나) 체육시설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
  - 다) 사용허가 기간 7일 이내로 제한하여 일부단체의 독점사용 예방
  - 라)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은 같은 순위로 사용허가
- 3)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(안 제10조·제22조)
  - 가) 사용제한,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제한,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
  - 나) 입간판·현수막·벽보 등의 홍보물 설치 금지
- 4)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자 확대(안 별표 2)
  - 가)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모두 기재
  - 나)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권고사항 반영
- 5) 사용료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(안 별표 3)
  - 가) 불가항력적인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
  - 나) 군의 귀책사유 시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해용)

- 가. 「2020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」에 의거 국민생활 속 반칙·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방안 및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경감 방안을 반영함
- 나. 군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분야의 청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며, 청렴을 군민의 일상 속 문화로 정착하고자 함
- 다.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"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규정"을 적용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라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기재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- 붙 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"활용실태를 수시로"를 "이용실태를 분기별로"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개방제한)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사용허가)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

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-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신청을 할수 있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.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1. 제1항에 따른 신청: 사용일 7일 전
- 2.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청: 사용일 3일 전
-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신청자 별로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-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,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제1항·제2항을 각각 제2항·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(기존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 각각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(종전 제1항)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3호·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민(개인·단체·법인을 말한다)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
- 3.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(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)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- 5. 경기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(다만,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)

제9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"제한할 수 있다."를 "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"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·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
- 5.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
- 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0조 각 호 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·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
- 7.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
- 8.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9조제1호·제3호의 사유로 사용제한을 받은 자나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·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제한·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.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사용료 반환)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"를 "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"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간판·현수막·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.

제24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 중 2. 국민체육센터 란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비고

1. "영유아"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, "어린이"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- 2. "청소년"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 등학생을 말한다.
- 3. "노인"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- 4. "군인"이란 「병역법」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(전투·의무 경찰,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5. "단체"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.

별표 2 중 100분의 50 감경 대상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비고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구조문 대비표

#### 혅 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이 설치 한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<삭 제>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체육시설"이란 종합운동장, 보조 ▷(제1호)제1조에서 「체육시설의 설 경기장, 거창군 체육관, 국민체육센 터. 사격장, 테니스장, 게이트볼장, 족구장. 궁도장, 골프연습장, 농구장,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스포츠파크 일 원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, 고제면 문 화체육회관을 말한다.
- 2. "시설의 사용"이란 제1호의 체육시 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3. "사용자"란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개인연 습, 체력단련, 경기연습, 상설 스포츠 교실 등 개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 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 하며, "사용료"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- 4. "관람자"라 사용자가 개최하는 체 육경기나 문화행사 · 공연 · 전람 · 전 시 등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, "관람료"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- 5. "관람권"이란 사용자가 체육경기나 문화행사 · 공연 · 전람 · 전시 등 체 육경기 외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 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.
- 6. "영유아"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 람을 말하고, "어린이"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

#### 개 정 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\_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체육시설의 효율 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로 규정했으므로 용어정의 불 필요

▷(제2호~제5호)별도로 정의하지 않더 라도 일반적인 용어 사용과 유사하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.

▷(제6호~제9호. 제13호) 별표 2 감 경기준에서 규정함

을 말한다.

- 7. "청소년"이란 13세 이상 18세 이 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
- 8. "노인"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 하다.
- 9. "군인"이란 「병역법」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(전투·의무경찰,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워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10.~12. 삭제<2018.10.31.>
- 13. "단체"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 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 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.

#### 제3조(시설의 개방)

- ①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체육 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· 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 방하여야 한다.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 포츠교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연간·월간·주간·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.
- 1.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,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
- 2.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
- 3.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
-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<u>활용실태를 수</u> 시로 점검하고,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제3조(시설의 개방)

- ②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·운영할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1.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, 이용 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
- 2.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.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
-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<u>이용실태를 분기별로</u> 점검하고,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하다.

제4조(개방제한)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.
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
- 2. 시설의 개·보수를 하는 경우
- 3.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 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
<u>제7조(사용허가)</u> ① 체육시설을 사용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,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4조(개방제한)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 나 체육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 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.

▷법 제8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여야 하므로 법령에 규정된 개방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

제7조(사용허가)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-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 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.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1. 제1항에 따른 신청: 사용일 7일 전 2.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: 사용일 3일 전
-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신청자 별로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
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,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.

#### 제8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

<신 설>

-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· 주최하는 행사나 경기
- 2. 체육 ·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 창군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. 주관하는 체육대회나 행사
- 3.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- 4. 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, 직장,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 육활동이나 행사
- 5. 경기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- 6.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· 공연 · 전람 •전시 등 행사
- 7. 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 나 활동의 성격,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#### 제8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

-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민(개인·단 체·법인을 말한다)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 가할 수 있다.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· 주최하는 행사나 경기
- 2. 체육·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 창군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. 주관하는 체육대회나 행사
- 3.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(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 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 · 고등학생 을 말한다)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- 4. 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, 직장,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 활동이나 행사
- 5. 경기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(다만.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)
- 6.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· 공연 · 전람 •전시 등 행사
- 7. 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 나 활동의 성격,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제9조(사용제한)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제9조(사용제한)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

제한할 수 있다.

-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 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
- 2. 체육시설의 유지 ·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- 3.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
- 4.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

<신 설>

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-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
-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4.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5. 체육시설의 유지 ·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
(신

<신 설>

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역 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
- 2. 체육시설의 유지 ·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- 3.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
- 4.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
- 5.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
- <신 설> 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군수는 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

행위를 한 경우 2.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2.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

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
- 3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4.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
- 5. 체육시설의 유지 ·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- <신 설> 6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
- <신 설> 7.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 설> 8.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② 제9조제1호·제3호의 사유로 사용 제한을 받은 자나 제10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·제7호의 사유 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제한·취소 또는 정 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 한다.

<신 설>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

- 20 -

제16조(사용료 반환)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
- 1. 천재지변,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 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
- 2.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화
- 3.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 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 지된 경우 :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 액 반화
- 4.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: 납부한 사 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 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
- 5.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: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

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〈신 설〉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 <삭 제>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등을 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주민 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다.

제16조(사용료 반환) 이미 납부한 사용 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화한다.

제22조(사용자의 설비) 사용자가 사용 제22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간판·현수 막 병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 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.

#### [별표 2]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기준(제15조제1항관련)

감경대상	감경률
다음 각 호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	100
적용한다.	분 의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50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3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	
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
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	
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	
<u>이 310년   마이거리 1의 원인 법을 가장하는 제32고제1 등 각 모의 각으 하다</u> 에 해당하는 사람	
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	
해당하는 사람	
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9 <u>식 오의 식으 아나에 애칭하는 사람</u> 9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	
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	
10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보건복지부장관이	
정하여 고시하는 <u>장애정도가 심한</u>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	
1명을 포함한다) 11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	
11. 「한구도가득시선법」세4조에 떠는 한구도가득   12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	
13.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내 18세	
이하 자녀	
14.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	

#### 비고

- 1. "영유아"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, "어린이"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- 2. "청소년"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
- 3. "노인"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- 4. "군인"이란 「병역법」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(전투·의무경찰, 교정시 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[별표 3]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기준(제16조 관련)

구분	반환 기준
1.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, 및 사회재난에 해당 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 될 경우	나. 사용개시일 이후: 취소일까지의 사용
2. 거창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	가. 사용일 3일 전: 사용료 전액 나.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: 사용료 전액 + 위약금 다. 사용개시일 이후: 「체육시설의 설치·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의2 제2호나목 준용
3.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	가. 예약한 그날: 사용료 전액 나. 사용일 3일 전: 사용료 전액 다.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: 사용료 전액 - 위약금 라. 사용개시일 이후: 「체육시설의 설치·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의2 제1호나목 준용

위약금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말한다.

## 의안번호 제2021 - 6호

## \_\_\_\_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\_\_\_ - **심 사 보 고 서** \_\_

2021. 1. 26.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1. 12. 신재화 의원 외 10인 발의 나. 회부일자 : 2021. 1. 14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(2021. 1. 26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신재화 의원]

## 가. 제안이유

○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문화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의 문화, 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- 2) 용어의 뜻을 정함(안 제2조)
- 3) 군수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- 4) 거리공연 장소 운영을 정함(안 제4조)

- 5)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
  - 거리공연가의 창작 및 활동,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,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·운영, 상설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, 거리 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
- 6)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- 7) 질서유지 관리원 배치를 정함(안 제7조)
- 8) 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을 정함(안 제8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이해용]

- 가.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모든 분야 활동을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문화 소외 계층의 향유기회를 확대하며 문화활동 장려를 목적으로 시행하고자함.
- 나. 거창한마당대축제 등 지역축제나 거창전통시장 활성화 공연, 근대의료박물관 정원음악회 등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제공과 청년 음악인의 유입,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가치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다. 다만 거리공연으로 인해 군민들의 보행 및 이동제한, 불법 상행위, 소음 및 환경훼손 등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사료됨
- 라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기재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붙 임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

##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문화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의 문화, 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거리공연"이란 도로, 광장,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(노래·악기연주 포함), 춤, 마술, 미술, 저글링, 전시,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.
- 2. "거리공연가"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"상설화"란 거리공연을 장르별, 요일별, 장소별,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,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거리공연 장소 운영)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5조(활성화 사업)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1. 거리공연가의 창작 및 활동
- 2.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
- 3.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·운영

- 4. 상설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
- 5.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질서유지 관리원) ① 군수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- ② 질서유지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·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·사용
- 2. 소음
- 3. 보행 방해
- 4. 불법 상행위
- 5. 환경 훼손 등
- ③ 질서유지 관리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8조(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) 군수는 거리공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의안번호 제2021 - 7호

## ─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─ **─ 삼 사 보 고 서** —

2021. 1. 26.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1. 12. 권순모 의원 외 10인 발의 나. 회부일자 : 2021. 1. 14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(2021. 1. 26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권순모 의원]

## 가. 제안이유

○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군수 및 사업주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3) 지원 계획 및 사업(안 제5조)
- 4) 재정지원(안 제6조)
- 5) 업무의 위탁(안 제7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이해용]

- 가. 혼인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단절된 여성을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,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
- 나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기재생략
- 5. 토론요지: 없음
- 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  - 붙 임 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거창군수(이하 "군수"이라 한다)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주의 책무)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 계획 및 사업)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예방 및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- 1.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군수가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- 2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
- 3.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
- 4.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

- 5.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,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6조(재정지원)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업무의 위탁)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